

의안 번호	2415	<b>[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5. 2.(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5. 15.(목)

## 2. 제안이유

- 홍보환경의 변화로 소셜미디어 홍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구소식지 발행 횟수를 줄이고 소셜미디어 홍보에 집중하고자 중구소식지 발행 주기 조문을 정비
- 2022년부터 중구명예기자단과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통합 운영에 따른 명예기자 관련 조문과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발행 방식에 맞지 않은 광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소식지 발행 주기 변경: 매월 → 분기별(안 제3조제1항)
- 명예기자의 역할, 위촉, 활동경비 관련 조문 삭제(안 제6조, 별표1)
- 소식지 광고 게재, 광고료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별표2)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홍보 환경의 변화로 소셜미디어 홍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구소식지 발행 횟수를 줄여 소셜미디어 홍보에 집중하고자 중구소식지 발행주기 조문을 정비하고,
- 중구 명예기자단과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통합 운영에 따른 명예기자 관련 조문과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발행 방식에 맞지 않은 광고 조문을 정비하여 새로운 홍보 환경에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